의 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제 76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1999. 6. 7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○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(구민등의 책무)조항은 상위법과 중복되며, 청결유지조항은 주관적·선언적 규정으로 폐지코자 함.(현행 제4조)

○ (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)조항은 봉투판매소의 지정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폐지코자 함.(현행 제20조)

○ (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) 전출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시 관할 동장의 확인을 거쳐 교환(현행 제22조)

○ (가산금등) 조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폐지코자 함.(현행 제27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1)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4조
2)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
3) 폐기물관리법 제13조3항
4) 지방세법 제27조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○ 합　　의 :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되었음.

2. 검토결과

□ **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비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과 중복되며, 불필요한 조항이 있어 규제완화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,**

□ **주요개정요지는**

○ 구민등의 책무로 규정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, 국민의 책무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(안 제4조)

○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조항은 현재까지 취소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(안 제20조)

○ 다른 지역으로 전출자의 쓰레기봉투 현금 교환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어떤판매소에서도 교환할수 있도록 개정(안 제22조)

○ 가산금 조항은 규격봉투 사용으로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므로 삭제 (안 제27조)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의된바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 안 제20조 봉투판매소 지정해제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건 발생시 필요한 조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안 제22조중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"이를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수 있다"를 "이를 구입한 동 관할지역내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수 있다"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참고사항

□ 관계법령

○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1,2항, 제13조

○ 지방세법 제27조

○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

〈 관 계 법 령 〉

폐기물관리법

第6條 (國民의 責務)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,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土地·建物의 所有者·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·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·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淸掃를 실시하여야 한다.

第13條 (生活廢棄物의 처리등) ①市長·郡守·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·運搬·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. 〈改正 95·8·4〉

②市長·郡守·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(이하 "廢棄物處理業者"라 한다)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·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. 〈改正 95·8·4〉

③市長·郡守·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·運搬·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. 〈改正 95·8·4〉

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〈新設 95·8·4〉

지 방 세 법

第27條 (加算金 및 督促) ①地方稅를 納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을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地方稅에 대하여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. 다만, 國家와 地方自治團體(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滯納된 地方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月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地方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金(이하 이 條에서 "重加算金"이라 한다)을 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. 이 경우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. 〈改正 93·12·27 法4611〉

③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稅務公務員은 納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15日이내(銀行納인 경우에는 50日이내)에 10日이내의 納期限을 붙인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한다. 다만,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전에 徵收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. 〈改正 88·12·26, 93·12·27 法4611〉